

『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가족 중심의 레저활동 저변확대 및 여가공간 확충을 위한 「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」의 조성이 마무리 됨에 따라,
- 시설의 관리·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우수한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시설관리·운영의 활성화 도모 및 이용자의 편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위탁재산 현황
 - 시 설 명 :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
 - 위 치 : 구미시 양호동 614-10번지 일원
 - 면 적 : 18,004㎡(물놀이장 9,638㎡, 다목적광장 8,366㎡)

- 사 업 비 : 5,000백만원(국비 2,500, 도비 500, 시비 2,000)

- 주요시설

- 물놀이장 : 관리사무소 1대, 의무실 1대, 창고 1대, 이동식화장실 4대, CCTV 9대, 음수대 2개, 방송시설 1식, 여과 시설 3기, 오수처리시설 1식

- 다목적광장 : 주차장 146대 규모

○ 위탁업무 :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전반

○ 위탁기간 : 2019. 4. 1. ~ 2022. 3. 31. (3년)

○ 2019년 운영 소요예산 : 400백만원

(단위 : 백만원)

계	위탁금	'19년 운영기간	비고
400	400	2019. 7. ~ 2019. 8.	운영기간 조정가능

4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

○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4조, 제5조, 제6조

○ 「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5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」은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의 사무위임 규정과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,
- 민간위탁 목적이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인 만큼 최소한의 예산으로 관리의 능률성을 높이고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위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